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080호 2015. 4. 13.(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454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47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정정)-----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4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6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4.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검단로114번길 7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4. 1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4-1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5-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114번길 7 (오류동, 대동모벨시스템(주	2012-10-25	검단로 시작지점부터 1,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63-294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335 (경서동)	2009-07-10	계양산과 천마산사이 징명이고개를 통과하는 도로구간으로 징명이고개의 한자표기말인 <경명>명칭에서 부여	
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5-9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로 180 (오류동)	2012-10-25	"나가서 맞이한다" 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4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55-18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78번길 32 (가좌동, (주)셀텍)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31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47-18 (원창동, (주)유원우드)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30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47-24 (원창동, (주)유원우드)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13-6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5번안길 42-7 (왕길동)	2008-12-31	완정로65번길의 안쪽으로분기되어있는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81-1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160 (오류동, 씨티전기주식회사)	2011-11-15	인천 서구 정서진의 지명을 이용하여 '정서진로'로 명명 함.	
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52-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144번길 20 (경서동)	2010-11-11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1,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7-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42번길 6-25 (경서동)	2012-03-30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3-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29-7 (경서동, 서희)	2012-03-30	청라경관구조 계획에 의거 청라중심에 canal?? 이 있음을 부각	
1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8-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329번길 19-8 (경서동)	2012-03-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3,2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0-24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39 (당하동, 거영블루힐)	2008-12-31	청마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함	
14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0-25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39-1 (당하동, 거영블루힐)	2008-12-31	청마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함	
1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6-83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13번길 16 (경서동)	2013-07-30	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고시일 : 2015-04-1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 서구 석남동 223-638	거북로24번길 16	봉수대로300번길 18	건물군 분할	2009-07-01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454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연번	기 정					변 경 (안)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분할가능 획 지 수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	82	3,711.4	1	531.6	-	82	3,711.4	1	685.7	-
			2	521.8	-			2	521.8	-
			4	502.8	-			4	502.8	-
			5	159.9	-			5	159.9	-
			6	207.0	-			6	207.0	-
			7	235.3	-			7	235.3	-
			8	384.1	2			8	384.1	2
			9	221.5	-			9	221.5	-
			10	216.2	-			10	216.2	-
			11	450.0	-			11	450.0	-
			13	154.1	-					
			15	127.1	-			15	127.1	-

※ 서구 검암동 648-1, -3번지 획지합병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82	1, 13 → 1	획지합병	건축면적 확장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6.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7.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47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정정)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정정)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의 권익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인원을 '13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개정(안 제3조)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포함(안 제4조)
-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5.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032-560-4736, FAX 032-560-276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52조에 따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운영등에 관하여”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에 의한”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조정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포함한 13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담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2항 중 “주택허가담당”을 “공동주택관리센터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다음 각호의 1”을 “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진행중”을 “진행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를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를 “운영 등에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 ----- -----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 ----- -----.</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 ----- -----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 ----- ----- ----- -----.</p>
<p>제3조(위원회 구성) ① <u>조정위원회</u>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u>1인</u>을 포함한 <u>13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3조(위원회 구성) ① <u>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조정위원회</u>(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u>1명</u>을 포함한 <u>10명</u> ----- ----- -----.</p>

②·③ (생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분쟁

2.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한 분쟁

3.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

4.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

5.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신설>

6.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4조(기능) -----

각호-----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담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생략)

② 간사는 건축과장, 서무는 주택허가담당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무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 1. ~ 3. (생략)
-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입주자라 함은 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동주택관리센터담당 ---

--.

제8조(위원의 제척)

- 1. ~ 3. (현행과 같음)
- 4.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

말한다)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생략)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1 이상-----

----- 따라 -----

② 제1항에 따른-----

----- 따라 -----

③ 제2항에 따른-----

----- 따라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라-----

제11조(조정외의 거부 및 중지) ① (생략)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조정외의 효력)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조정외의 거부 및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진행 중-----

-----.

③ ----- 제2항에 따른-----

-----.

제12조(조정외의 효력) 제9조제3항에 따라-----

-----.

제13조(수당등) -----

-----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

<p>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조정위원회의 <u>운영등에</u> 관하여 <u>필요한</u>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운영규칙) ----- ----- ----- <u>운영 등에 필요</u> ----- ----- ----- -----.</p>
--	---

< 소관 부서명 >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센터	
연 락 처	(032) 560 - 4736

〈관계 법령 발췌 사항〉

□ 주택법 제52조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생략)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2013.6.1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4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국 신설로 경제환경국장의 조례·규칙심의회 회의참석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에 경제환경국장 추가(안 제2조)
- 주민발의 조례안 유효서명 확인 및 이의신청 등의 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위촉 근거 및 수당 지급 근거 신설(안 제2조, 제14조)
-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심의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63,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총무국장
2. 문화복지국장
3. 경제환경국장
4. 도시관리국장
5. 보건소장
6. 기획예산실장

④ 위촉직 위원은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위촉하며,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가 접수되었을 때 위촉하고, 해당 조례안의 처리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제3조제2호 본문 중 “지방의회의”를 “의회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를 “구청장이 의회”로, “조례 공포 안”을 “조례공포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을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제3조제5호 중 “기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및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장등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소관사무 등”을 “소관사무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특별히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심의보류”를 “심의보류, 재의요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국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장등”을 “보건소장·출장소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안등”을 각각 “조례안 등”으로, “각호”를 “각호”로, “조례안등과 필요한 자료(검토의견서·재의요구서·참고자료등)”를 “조례안등과 필요한 자료(검토의견서·재의요구서·참고자료 등)”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안의결된 조례안 등은 제외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조례안등”을 “조례안 등”으로, “감사법무담당”을 “법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례안등을”을 “조례안 등을”로, “조례안등”을 각각 “조례안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7항 중 “감사법무담당은 필요시”를 “법무담당은 필요 시”로, “심사완료시”를 “심사완료 시”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감사법무담당”을 “법무담당”으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례안등”을 “조례안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전보고후”를 “사전보고 후”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간사등)”을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사법무담당”을 “법무담당”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16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24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가운데 정렬)

<p>인천광역시 서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

- ※ 규칙, 훈령, 예규 서식도 이 서식을 사용(일반안건은 표지만 준용)
- ※ 제정의 경우 ○○안, 전부개정의 경우 전부개정○○안, 폐지의 경우 폐지○○안으로 표시

16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제 출 자	○○○○실·장
제출년월일	년 월 일

16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p>기획예산실장 심사를 마칩</p>

18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의결주문 (15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인천광역시 서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나.

3. 주요내용

가.

(안 제 조제 항)

나.

(안 제 조제 항)

4. 참고사항

가. 실·과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14point 신명조)

18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인천광역시 서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포인트 신명조 -----↓

인천광역시 서구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4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24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실·과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실·국과별 의견수렴 결과			
협약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 방법 :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 방법 :			

24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p>관계법령</p>	<p><input type="checkbox"/> ○○○법</p> <p>○ 제○조(○○○○) -----</p> <p>○ 제○조(○○○○) -----</p> <p><input type="checkbox"/> ○○○법 시행령</p> <p>○ 제○조(○○○○) -----</p> <p>○ 제○조(○○○○) -----</p> <p>※ 관련 법령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p>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특이사항</p>	

24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5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국 △△ 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계
세입	△△△△ △△△△						
	소계						
세출	△△△△ △△△△						
	소계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24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15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국 △△ 과장 ○○○

[별지 제2호서식]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총 건: 조례공포안 건 조례안 건 규칙안 건 훈령안 건 예규안 건 일반안 건)
년 월 일(), :

순 번	의안 번호	제출 부서	안 건 명	개정 형식	비 고

<작성요령>

-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부여
-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훈령안, 예규안, 일반안순
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 규칙심의회 회의록

회의의 명칭	
개 최 부 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심의결과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년 월 일

순번	의안 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비고

심의위원

서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 ----- ----- ----- --.</p>
<p>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서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심의회 위원은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p>	<p>② 심의회의 의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p>
<p><신 설></p>	<p>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무국장 2. 문화복지국장 3. 경제환경국장 4. 도시관리국장 5. 보건소장 6. 기획예산실장

<신 설>

<신 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④ 위촉직 위원은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위촉하며,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가 접수되었을 때 위촉하고, 해당 조례안의 처리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 ----- 각 호-----
-----.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 구청장이 의회-----
----- 조례공포안-----.
3. -----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

4.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기타 지방의 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신 설>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심의회에는 기획담당 및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장등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관사무등에 관

5. ----- 및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구청장-----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장의 임무) ① -----
 ----- 총괄하며-----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
 ----- 그 밖에 --
 ----- 사람을 -----
 -----.

②-----
 ----- 관계공무원-----
 ----- 소관사무 등-----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조(회의운영) ①·② (생략)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⑤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안 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7조(의안제출등) ① 의안은 실·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소관업무 실·과장이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장등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업무 실·과장이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법제심사 및 기타 필요한 절차를 거친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

- 다만 안건의 내용이 특별히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재적위원 -----.

④ (현행과 같음)

⑤ ----- 심의보류, 재의요구 -----.

제7조(의안제출등) ① ----- 실·과장 -----

② 보건소장·출장소장 등 -----.

③ ----- 그 밖의 -----

실·과장이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등은 소관업무 실·과장이 각호의 절차를 거쳐 별지 제 1호서식에 조례안등과 필요한 자료(검토의견서·재의요구서·참고자료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의회에서 조례안등이 의결되어 구청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감사법무담당은 즉시 소관 실·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례안등을 통보받은 실·과장은 조례안등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

④ -----
- 조례안 등-----
- 각 호-----
----- 조례안
등과 필요한 자료(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참고자료 등)-----
----- . 다만 원안의결
된 조례안 등은 제외한다.

1. ----- 조례안 등-----

법무담당-----
-----.

2. 조례안 등을 -----
----- 조례안 등-----

-----.

⑤ -----
----- 10일 전-----

-----.

아니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4항제1호에 의하여 조례안등을 통보받은 각 실·과장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⑦ 감사법무담당은 필요시 관계 부서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완료시에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자를 확정한다.

⑧ 감사법무담당은 제출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이상의 실·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과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국·

-----.

⑥ -----

----- 지체 없이 -----
----- .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법무담당은 필요시-----

-- 심사완료 시-----
----- 따
라 -----
----- .

⑧ 법무담당-----
----- 3일 전-----

----- .

제9조(합의) -----
----- 둘 이상-----

----- .
----- .

제10조(대리출석) ① -----

실의 주무과장, 주무담당이 대
리출석 한다.

② (생략)

제12조(심의결과처리) ① 심의회
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안가결
된 의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
리한다.

1. (생략)

2.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등은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

3. 규칙안은 사전보고후 공포

② (생략)

제13조(간사등) ① 심의회의 사무
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를 두되, 간사는 감사법무담당
이 된다.

②·③ (생략)

<신설>

---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의결과처리) ① -----

----- 각호-----

-----.

1. (현행과 같음)

2. -----

조례안 등-----

--

3. ---- 사전보고 후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간사 등) ① -----

----- 법무담당---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서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0 0 0

주소/전화번호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